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진급 시 진급된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176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급여조정 대상에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가 포함됨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전 식별 등을 위해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서 진급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3조제4항 신설)

전사·순직하여 특별진급된 군인의 급여 산정 시, 해당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추서 진급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 확대(안 제57조)

- 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출 요청대상 자료의 범위에 추가
- 2) 수급자 사망 미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사전 식별, 채권관리 등을 위

해 장기요양급여자료, 개인회생·파산 관련 자료 등 요청대상 자료를
추가

다. 「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과 일치화(안 제57조의 2 신설, 제60조)

1) 문서 형태뿐만 아니라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요청대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범위에
‘범죄경력자료’ 추가

라. 법 제13조 제3항 신설로 기존 제3항이 제4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
용 조문 정비(안 제2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1. ~ 9.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2.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급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제20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호 중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 등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장기요양급여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출입국자료”를 “출입국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장애인 등록자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등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중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7호”로 한다.

14.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수급자료: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자료: 질병관리청장

17.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인에 관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자료 제공의 방법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 로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2.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급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① 별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 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 다.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① 별 제13조제4항-----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

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 5. (생략)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 8. (생략)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위 등) -----

-----.

1. (현행과 같음)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 등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3. ~ 5. (현행과 같음)

6. -----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장기요양급여자료 -----

7. ~ 8. (현행과 같음)

9. 출입국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치료

	<u>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u> ---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u>장애인 등록자료</u> : 보건복지부장관	11. 「 <u>장애인복지법</u> 」에 따른 <u>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등에 관한 자료</u> ----- --
12. ~ 13. (생략)	12. ~ 13. (현행과 같음)
<u><신설></u>	14. <u>별정우체국연금 가입·수급 자료</u> : <u>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u>
14. (생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u><신설></u>	16.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자료: <u>질병관리청장</u>
<u><신설></u>	17. 「 <u>공직선거법</u> 」에 따른 당선인에 관한 자료: <u>중앙선거관리위원장</u>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기관	18. ----- -- <u>제17호</u> -----
<u><신설></u>	<u>제57조의2(자료 제공의 방법 등)</u> <u>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전</u>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u>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1. ~ 13. (생략)	<u>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u>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u>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u>----- -----. 1. ~ 1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연금과	
연 락 처	(02) 748 - 6671